



제4회 지식한국 정책토론회

The 4th Policy Debate on Knowledge Korea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이 답이다!



국회의원 강은희

program

시 간		내 용		비 고
09:30~10:00	30'	등록		안내
10:00~10:20	20'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 황인자 국회의원 (새누리당)
			개회사 강은희 국회의원(새누리당)	
			축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10:20~10:50	30'	주제 발표		좌장 : 임종인 교수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장)
10:50~11:50	60'	토론 및 질의응답		
11:50~12:00	10'	마무리 및 기념촬영		

contents

개회사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04
축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06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	08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10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차관	12
발제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상 문제점과 대안 _ 성선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객원교수	15
	개인정보 보호법제 통합 및 정부조직 개선방향 _ 김경환 법무법인 민 후 변호사	25
토론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111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115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121
	김국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127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135
	최성진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145

개회사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카드3사의 1억건이 넘는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금융권, 통신사, 호텔업, 소셜커머스 등 분야를 막론하고 개인정보유출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유출사건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대량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은 특정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사전조치와 피해방지를 위한 사후조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사건에서 법의 규정과 현장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의 사이에는 큰 현실적 괴리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일반법으로 공적·사적 영역과 온·오프라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상위법으로 제정돼 있지만, 정보통신과 금융 등 소관 부처별로 산재한 개별 법률들 간에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중복되어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이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을 진단하고 법과 관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재정립하여 세계 최고의 ICT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정보보안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완비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성선제 교수님과 김경환 변호사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토론회를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바쁜 일정에도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 사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입니다.

제4회 지식한국 정책토론회「개인정보 보호법, 통합이 답이다!」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강은희 의원님과 행사에 참석해주신 각계 전문가 분들을 비롯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기업의 마케팅 등 개인정보의 활용가치가 높아진 반면, 동시에 보이스 피싱과 스미싱 등 개인정보의 사회적 노출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기업은 물론 관계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 무방비로 노출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고도의 산업화에 이은 발 빠른 정보화로 명실상부한 IT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보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부실은 물론 관련 산업발전까지 가로막는 답답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주로 취급하는 금융권만 해도 관련법이「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등 4개 법안에 걸쳐 있고, 그 내용도 달라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후 제재에 초점을 맞춘 땀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합하는데 주목하여 오늘 토론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들의 문제점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제도적 틀 안에서 이를 지켜야 할 기업과 구성원들로 하여금 인식의 전환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홍문중
새누리당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사무총장 홍문중입니다.

조용히 내린 봄비를 시작으로 꽃봉우리들도 만개할 준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봄내음 가득한 시기를 맞아 개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이 답이다!’ 정책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위해 준비해주신 관계자 분들과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내외귀빈 분들, 그리고 오늘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은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강은희 의원님은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당 원내대변인을 역임하면서 국민과 교류하며 당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여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도 큰 공헌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강은희 의원의 건승을 위하여 많은 분들의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을 정리하고 법체계를 확립하여 하나의 통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통합법을 통해 각 법률사이에 결여되어 있던 형평성을 맞추고, 법 적용상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방지하며, 정보유출 피해구제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얼마 전, 전 국민을 충격으로 빠트렸던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 외에도 그 동안 옥션, SK컴즈, 넥슨, KT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조차 소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각 사업별 상이한 법체제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 분리감독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처럼 각 사업별로 특수성을 반영하여 한 발 앞서 대응할 수 방안도 통합법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소중한 국민의 정보를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정보보호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는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강은희 의원님과 관계자 분들, 내외귀빈 분들께 감사드리며, 따스한 봄기운처럼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근 여러 분야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국민들을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시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회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은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관심을 갖고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초고속망 보급, 인터넷 이용, 전자정부 수준, 전자적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 거의 모든 정보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융 분야 뿐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활용으로 인한 피해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10일 금융위, 안행부, 방통위, 미래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출과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범정부적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과 금융분야 뿐 아니라 복지, 통신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 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보안 강화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기업 스스로가 고객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나누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통합이 답이다!」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금융,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3.10)하였고, 범정부 T/F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점검하고 국가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오랜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 된지 3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홍보 및 실태점검 등 개인정보보호법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와 같은 법 개정도 있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과 사업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관련 법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국회,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본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발제 1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상 문제점과 대안

성 선 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객원교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상 문제점과 대안

성선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객원교수

목차

- 현황
- 문제점
- 대안
 - 투명성 강화
 - 전문성 강화
 - 주민등록번호 폐지

현황

- 특징 - 빙산의 일각(신용카드사, KT, 티몬 등), 도미노, 공황, 망각, 무기력, 체념, Next?
- 피해
 - 정치적 불안: 해결능력 부재, 의지 의심
 - 사회적 불신: 도덕적 불감증
 - 경제적 피해: (개인정보=돈) 기하급수적

문제점 - 제도적 차원

- 일반법 v. 특별법: 일반법의 형해화 내지 무력화
- 중복규제: 금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기 다른 4개 법률을 준수
- 규제 형평성: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정보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금융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사업자들의 경우 암호화(개정)
- 컨트롤타워 부재: 안전행정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 2013년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설치(1.3%), 전담부서 부재(72.7%),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 예산 전무(95.9%)
- 애로사항 - 개인정보 처리절차의 복잡성(54.4%), 법률내용의 이해곤란(48.8%), 기술적 전문성 부족(25.2%), 인력 부족(18.4%), 예산 부족(18.4%)

문제점 - 인재(人災)

- 업무담당자를 비롯한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부재
- 내부관리체계와 보안대책의 부실
- 수집·이용·제공·위탁·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기준·절차의 무시

대안 - 투명성 강화 1

- 자신의 정보가 어떤 용도로 수집·이용되고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모른다면 정보주체의 불안과 불신 가중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동의에 의한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즉시 파기, 처리위탁 사항의 공개,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등 제도적 장치
- 그러나 동의제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가 아닌 선택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수집·이용·제공하는 면책성 수단으로 남용·악용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유출사고 등에 의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사실상 그 처리의 내용과 과정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가능성 불가능
- 선택정보의 수집을 위해 동의절차를 악용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적극 규제할 필요

대안 - 투명성 강화 2

-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내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의 흐름을 정보주체가 확인 가능하도록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작성

대안 - 투명성 강화 3

- 시스템 대신 인적 관찰 수행(불편 감수)
- 이상 징후자 예방적 차원 업무 전환-도박, 과소비, 의기소침
- 정보 단독 처리 억제
- 정기적 심리체크 - 부적절자 배제
- 수시 업무 감독
- 수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신원조회 등 자격 요건 및 책임기준 강화

대안 - 투명성 강화 4

-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 보호 수준의 공시를 의무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금융·의료·통신·전자상거래 등 주요 업종까지 확대
- 개인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보수를 수탁처리하거나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수탁받아 집중처리하는 수탁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인증 취득

대안 - 전문성 강화 1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비롯한 임·직원
에 대한 정기적 교육 의무화
- 업종별·직무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무능력표
준을 제정·보급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을 양성·공급
-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
를 전담하는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 지원을 강
화

대안 - 전문성 강화 2

-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법적 기준·절차와 안전조
치 기준 등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제작·보급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시 컨설팅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 -2013년 실태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체(57.9%)
- 암호화된 상태에서의 개인정보 이용기술, 주민등록
번호 분리 보관 기술 등 새로운 보호기술과 중소기
업 등의 안전조치를 위한 표준 시스템의 개발·보급

대안 - 주민등록번호 폐지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2012년 8월부터 주
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 그 외의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 기존에 수집·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도
2016년 8월까지 파기

대안 - 주민등록번호 폐지

- i-PIN(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등
대체 식별번호의 활용
 - i-PIN 역시 주민등록번호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민
간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해킹 시 주민
등록번호 유출 우려가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활용하
기 위해서는 별도의 본인확인체계가 필요하다는 등
의 단점
-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통한 무의미한 발급번호 부여

대안 - 주민등록번호 폐지

- 주민등록번호 폐지에 따른 행정상의 혼선
 - 국민의 이익과 행정상의 혼선 중 어느 가치가 우선하는가?
- * 새로운 번호체계 및 정보관리방식의 도입에 따른 행정적·사회적 비용부담
 - 일회적 비용 부담으로 더 큰 손실 방지
 - 근본적인 방안


발제 2

개인정보 보호법제 통합 및 정부조직 개선방향

김경환
법무법인 민 후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제 통합 및 정부조직 개선방향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民厚

목 차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공급자 중심 법체계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중복규제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규제·책임의 비형평성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권리구제의 어려움
-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통합 : 통합법의 필요성
-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통합 : 법통합에 따른 조직 개선
-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통합 : 구체적인 방안
- 각 조문의 비교·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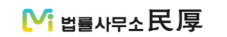
 법률사무소 民厚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
- 경제성장의 전제
 -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 개인정보 활용으로 급성장한 기업
 - 최근 카드사의 신용정보유출·KT의 개인정보 유출 : 매출의 감소
 - 오바마(2012년,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프레임워크) : 소비자의 개인정보관리에 대한 신뢰는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



- 국민의 인식은 높아지는데, 기업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 복잡하고 준수하기 어려운 개인정보보호 법체계
 - 주무기관의 느슨한 법집행
 - 각 주무기관 사이의 비형평적인 규제
 -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풍토
 -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 관행
- 이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 및 감독기구 측면에서 서술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의 현황

-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국민의 인식은 상승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2차 피해 : SK컴즈의 3,500만명, 넥슨의 1,320만명, KT의 870만명, EBS의 400만명, 국민·롯데·농협의 1억 400만명, KT의 1,200만명

RECORDS	DATE	ORGANIZATIONS
152,000,000	2013-10-03	Adobe Systems, Inc.
150,000,000	2012-03-17	Shanghai Roadway D&B Marketing Services Co. Ltd.
140,000,000	2013-06-08	Unknown Organization
130,000,000	2009-01-20	Heartland Payment Systems, Tower Federal Credit Union, Beverly National Bank, North Middlesex Savings Bank, Golden Chick
110,000,000	2013-12-18	Target Brands, Inc., Fazio Mechanical Services, Inc.
104,000,000	2014-01-20	Korea Credit Bureau, NH Nonghyup Card, Lotte Card, KB Kookmin Card
94,000,000	2007-01-17	TJX Companies Inc.
90,000,000	1984-06-01	TRW, Sears Roebuck
77,000,000	2011-04-26	Sony Corporation

(출처:datalossdb.org)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공급자 중심 법체계

- 현재의 법체계 :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법체계

주무기관	수범자	개인정보	법률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업자 금융회사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의료정보	의료법
교육부	교육기관	교육정보	교육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사업자 위치정보사업자	온라인정보 위치정보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보호법
안전행정부	공공기관 오프라인사업자 CCTV 설치자	일반개인정보 개인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



○ 수요자의 법 준수상의 혼란 또는 의도적인 회피 현상

- 예컨대 금융회사는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신용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의 30여개의 법률 및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예컨대 2013년 7월 안전행정부에서 발간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기관도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였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여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금융회사들 역시 자신들은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공급자의 법 집행상의 혼란도 매우 큼

- 어떤 사업자가 있을 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다툼이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이 사업운영시 온라인적 방법과 오프라인적 방법을 동시에 동원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평균 72.7%에 달하고 있는바, 적용법령의 결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음



○ 공급자의 입법상의 곤란 발생

- 예컨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규정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제법 등 수많은 법률을 모두 검토하고 개정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또 다른 예로, 기술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전체 기업의 망분리 의무화를 도입하는 시도를 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여러 법을 개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기업들이 사업운영시 온라인적 방법과 오프라인적 방법을 동시에 동원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온라인 고객용 DB와 오프라인 고객용 DB를 따로따로 법적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두 DB를 따로따로 관리하여야 하는가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다른 예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위탁시 문서로써 위탁을 하도록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는바, 만일 정보통신사업자가 문서로써 위탁을 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처벌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가 갈리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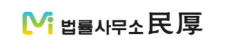
○ 공급자의 의도적인 규제 회피도 가능

- 예컨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바, 특정 행정기관이 어떤 의도에 의하여 자신이 관할하는 시행령·시행규칙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을 충분한 검토 없이 규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개인정보보호의 흐름에 역행하더라도 이를 미리 알고 막을 방법이 없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중복규제

- 수요자는 같은 사항이라도 유사한 여러 법령에 노출되어 그 법령을 모두 검토하고 지켜야 하는바,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준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움 ⇒ **중복규제**는 법의 실효성을 낮추고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



○ 법령 사이의 정합성도 떨어짐

- 예컨대 신용정보법은 민감한 신용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기본적인 최소수집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을 어기고 있음

○ 법 해석상의 정부의 입장과 법원의 입장이 상이할 수 있음

- 예컨대 현재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일부 금융계의 입장이나, 실제 법원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음



- 예컨대 개인정보수집시 고지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이 3가지(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를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이 4가지(3가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를 규정하고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에 3가지가 아닌 4가지를 고지하게 됨



- 다른 예로, 개인정보 위탁시, 정보통신망법은 위탁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게 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에게 공개만 하면 되는바,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기업은 개인정보 위탁시 공개도 하고 동의도 받게 됨



○ **현행 제재규정의 평가**

-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반면, 금융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짐(이번 신용정보 사고의 경우에는 600만원의 과태료)
- 원칙적으로 일반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신용정보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더 엄격한 보호조치가 수반되고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 반대임
- 실제 사례 중에, 실수로 카페탈퇴자에 대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카페장에게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나온 반면, 수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기관에게는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나온 적이 있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규제 · 책임의 비형평성

○ **현행 제재규정의 비교 (복불복의 상황)**

제재사항	신용정보법(과징금 無)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과징금 無)
수집위반	없음	과징금(1%) 5년이하 징역, 5천이하 벌금	5천이하 과태료
제공위반	1천이하 과태료	과징금(1%) 5년이하 징역, 5천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5천이하 벌금
위탁위반	1년이하 징역, 1천이하 벌금 1천이하 과태료	과징금(1%) 5년이하 징역, 5천이하 벌금	1천이하 과태료
보호조치 위반	1천이하 과태료	3천이하 과태료	3천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유출	없음	과징금(1억원) 2년이하 징역, 1천이하 벌금	2년이하 징역, 1천이하 벌금



○ **최소량의 법칙**

- 최소량의 법칙이 개인정보보호에도 적용됨. 왜냐하면 모든 기업은 동일한 개인의 동일한 개인정보를 중첩적으로 소지하고 있기에, 99개의 기업이 보호조치를 잘 취해도 1개의 기업이 유출하면 나머지 99개의 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 한 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그 보호수준이 가장 약한 기업에 의하여 결정됨. 예컨대 금융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업자들이 열심히 암호화를 한 효과가 없음
- 따라서 규제와 책임, 구제의 정도에 있어 일관성 · 형평성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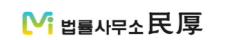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 : 권리구제의 어려움

- 특히 현재의 복잡한 법체계는 **피해구제에 방해 요소**가 되고 있음. 예컨대 신용정보회사가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유출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를 청구권원으로 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부분은 신용정보보호법 제43조를 청구권원으로 하여야 하는가? 관련 조항을 전부 챙겨야만 그나마 받은 피해를 주장이라도 할 수 있는 실정임
- 또 다른 예로, 피해구제 방법에 있어서도 신용정보 유출 우려시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견해가 갈릴 수 있음



- 통합법으로 인하여 각 주무기관 사이의 규제 정도나 전문성 등이 비교 가능할 것인바, 각 주무기관 사이의 **선의의 경쟁이 유도**되어 개인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각 주무기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국회의 추상적 규범통제**도 훨씬 수월해짐 (예컨대 국회는 각 주무기관의 과태료 부과 건수나 과징금 부과 건수만 비교해도, 실제로 어느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잘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통합 : 통합법의 필요성

- 하나의 통합법을 통하여 통일적으로 법적용을 하면, **규제가 단순화·일원화**됨으로 인하여, 분리감독 체제시 우려될 수 있는 규제의 분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
- 모든 수법자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하나의 법률만 지키면 되므로** 중복 규제는 없어지고, 규제도 불공평하지 않으며, 법 적용상의 혼란이나 피해구제의 난점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



- 핵심은 **잣대 즉 법령**임. 잣대만 제대로 통일적으로 단순하게 되어 있다면 누가 그 잣대를 들이대느냐 하는 것은 부수적인 문제임
- **최소량의 법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재와 같이 규제의 정도가 상이한 법령제도 하에서는 그 법령체계 때문에 어느 한 쪽이 고도의 규제를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구멍이 발생하여 전체적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저하될 수밖에 없음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통합 : 법통합에 따른 조직 개선

- <현행> <개선방향>
- 분리법령 ⇒ 통합법령
- 분리감독 ⇒ 분리감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재



- 각 주무기관이 수백만개의 법 적용 사업자를 영역별로 나누어 관리함으로써 행정효율성을 올릴 수 있음. 개인정보 행정은 피해자의 신고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단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통합 감독기구가 다양한 업종의 수백만개의 사업자를 단속하는 것이 쉽지 않아 통합 감독기구가 개인정보 단속을 독점하려면 인원을 늘릴 수밖에 없음. 이 경우 기존의 금융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안전행정부의 관련 인원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특히 기존 주무기관의 그간에 쌓인 노하우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단절되어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음



- 현행 분리감독 체계의 장점
- 기존에 나타난 개인정보 관련 감독의 혼선은 사업자에 대한 감독기구 특성의 혼선은 아니고, 오히려 다양한 법령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적용법령 특성의 혼선으로 판단됨
- 인 · 허가권을 가진 감독기구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하는 것이 제반 정책의 일관성 · 효율성이나 실질적인 규제에 기여함 (예컨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인 · 허가권을 가진 감독기구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도 하고 있음)



- 분리감독 체계의 유지는, 조직의 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상의 부담 ·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음
- 나아가, 각 개인정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사업자의 개인정보 활용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을 할 수 있음 (예컨대 의료기관의 의료정보 생성 과정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 검증 과정)



- 개인정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이용되고 있어, 실제로는 개인정보의 전문성보다는 **사업자 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예컨대 의료정보나 금융정보의 흐름이나 이용은 일반 개인정보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또한 각 사업별로 **기술적이고 국제적인 개인정보 트렌드를 잘 반영할 수 있고, 행태정보·상태정보·심리정보 등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개인정보의 활용 및 그에 따른 일탈방지·보호에 한 발 앞선 대응을 할 수 있음** (예컨대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클라우드 서비스와 개인정보, 원격의료와 의료정보 등)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확대

- 현재는 심의·의결 기관인바, 입법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나, 통합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부분에 관한 **공동 입법권 및 그 부분에 대한 행정입법권 보장**이 필요
- 각 행정부서에서의 **한시적인 직원 파견을 제한**하고, **독립적·전문적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회의 입장에서, 개인정보보호의 감시·감독에 있어서, 현행 분리 감독체제 하에서는 여러 상임위원회가 각 주무행정기관을 각각 감시함으로써 **감시의 공백을 막고 부담을 줄여 집중력을 높일 수 있음**
- **대외적**으로도, EU의 adequacy 충족이나 APEC의 CBPRs 도입을 위한 CPEA 가입은 현행 분리감독 체제에서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 실제로 일본은 16개의 기관이 CPEA에 가입되어 있음

- **법률에 의하여 축소된 재량권을 확대**함 (예컨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제도에 관하여, 사기업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요건을 완화하여 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재 기능 강화

- 통일적인 정책입안, 입법이나 법집행을 위하여, 각 행정기관 사이의 중재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조직 체계상으로도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어, 중재 권한 부여에 무리가 없음



- 통합법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중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내용은 앞서 기술함 {예컨대 각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보호 8원칙,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처리(수집·이용·제공·위탁·영업양도·파기), 보호조치, 정보주체 참여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단체소송,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형사처벌조항, 과태료는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공통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인바, 이러한 내용을 공통규정으로 묶을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통합 : 구체적인 방안

- 모든 개인정보에 관하여 적용되는 통합법을 만들고, 개인정보에 관한 각 법령에 있는 공통적인 규정(예컨대 신용정보법 제3장·제4장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4장 및 관련 제재규정)을 통합·흡수함 (다만 인·허가 규정이나 개인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행정규정은 통합·흡수 대상에서 제외)



- 특수한 내용은 공통적인 내용과 별개로 기술하되 예컨대 제6장은 ‘금융기관의 특칙’, 제7장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특칙’, 제8장은 ‘의료기관의 특칙’, 제9장은 ‘개인영상정보의 특칙’, 제10장은 ‘교육정보의 특칙’ 등으로 법률을 만들 수 있음 (예컨대 다른 법률에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이용내역통지제도는 제7장에 따로 규율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주무기관은 앞부분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에 참여하고, 각 주무기관은 통합법의 뒷부분에서 각 장 (chapter)을 배당받아, 공통적인 내용에서 적용이 제외되거나 추가되는 내용을 규정하고,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하여 법제도를 형성해 갑

감사합니다.

hi@minwho.kr

각 조문의 비교·검토

- 첨부자료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비교·검토 자료)
- 교육정보·의료정보 : 관련 조문이 많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규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 통합이 용이

참고자료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 (안)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p> <p>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p> <p>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p> <p>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p> <p>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p> <p>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p> <p>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p> <p>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p> <p>6.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p> <p>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p> <p>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p> <p>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p> <p>6. "신용정보집중기관"이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p> <p>7. "신용정보제공·이용자"란 고객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하여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p> <p>13. "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p>

<p>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p>	<p>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저장·가공·편집·검색·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나. 신용정보를 배달·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비슷한 행위</p>
통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란 법인등 단체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신용정보법상의 신용정보주체도 법인등 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임 ○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란 이용자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전제로 함 ○ 마찬가지로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전제로 함 ○ 법인등 단체에 관한 정보와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같은 법령에서 규율할 필요는 없고, 실제로 정보통신망법 제4장은 개인'이용자'를 전제로 한 개인정보를 따라 장을 할애하여 규율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도 법인등 단체의 정보와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같이 규율하다 보니, 조문이 복잡해지고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나오는 것임 ○ 개인에 관한 정보를 통합법에 모아 통합하여 규율하고, 법인등 단체의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에서 통합법을 준용하든지 또는 달리 규율하면 됨 	

<개인정보보호 원칙 및 정보주체의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p> <p>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p> <p>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p>	없음	없음

<p>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p> <p>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p> <p>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p> <p>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p>	
통합법	
<p>○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8가지 개인정보보호원칙이나 정보주체의 권리는 온라인의 경우나 신용정보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함에도 정보통신망법이나 신용정보법은 이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음</p>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제7조 내지 제10조		
통합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에 있어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의 중재 및 통로역할을 할 것임		

<수집>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 	<p>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p>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p>	<p>제15조(수집·조사의 원칙)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조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p> <p>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p>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p>

<p>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p>	<p>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통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비교하건대, 그 흐름이나 취지는 동일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음 ○ 신용정보법은 법인등 단체의 정보에 무게를 두다 보니, 최소수집의 원칙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수집시 고지할 내용도 침묵하고 있으며, 옵트인 원칙도 도입하지 않고 있음 ○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정보인바, 절차나 고지, 최소수집의 원칙이 더 잘 준수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못함 ○ 신용정보법도 수집에 있어 규정의 내용이 알아, 결국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할 수밖에 없음 ○ 법령을 통합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p>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4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p> <p>③ 개인식별정보가 이 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를 특정할 목적으로 제공·이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p>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우 개인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 요구에 따르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식별정보가 **제32조 제4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통합법

- 목적외 이용에 대한 허용범위가 상이한바, 정보통신망법을 해석하거나 신용정보법을 해석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시, 다른 법률과 달리 그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기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여야 할 듯하나, 이때는 각 동의를 구체적 절차가 생략된 개별법에 따라 해결하는 경향이 있음
- 결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피해가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음
- 법령을 통합하면, 구체적인 절차나 목적외 이용의 개념이 통일될 것임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p>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 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⑥ 제4항제3호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이용)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정보"라 한다)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용되어야 한다.
 ③ 개인식별정보가 이 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를 특정할 목적으로 제공·이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개인식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 요구에 따르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식별정보가 제32조 제4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이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통합법

- 목적외 제공이나 목적 내 제공의 구별에 있어, 각 법률의 태도가 다름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식별정보는 같은 정보를 가르키나, 그 규율이 다름
- 법원에의 제공, 수사기관에의 제공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절차가 다른 점에 있어서 어느 정도 통일을 꾀할 필요가 있음
- 법령 통합을 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제3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p>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합법		
<p>○ 온라인에서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고지의무가 있는지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법령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음</p>		

<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p> <p>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p> <p>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p> <p>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 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p> <p>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p>
통합법		
<p>○ 신용정보법은 파기에 대하여 실제로 침묵하고 있고 하위법령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민감한 정보로서 파기에 대하여는 엄격적용이 바람직해 보임</p> <p>○ 파기의 방법과 절차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함</p>		

<동의를 받는 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p>	<p>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단서 또는 제63조제2항에 따른 동의(이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라 한다)를 받는 방법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업종의 특성 및 이용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합법	
○ 신용정보법의 경우에도 엄격한 동의방식이 적용되어야 함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2조제1항 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통합법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나 정보통신망법의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또는 신용정보법상의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 등이 상이하게 정의되어 있어 혼란이 발생함 ○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은 동의를 얻을 경우 민감정보의 수집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신용정보법은 동의에 상관없이 수집불허의 태도이며, 다만 건강정보의 경우에만 동의를 얻어 수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개념을 통일하고, 규율 태도에 일관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함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p> <p>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p> <p>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p> <p>② 삭제</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삭제</p> <p>[시행일 : 2014.8.7.]</p> <p>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p> <p>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p> <p>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p>	<p>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p> <p>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 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p> <p>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p> <p>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p> <p>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p>	

<p>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p>	
통합법	
<p>○ 주민번호 수집 금지 및 처리 제한이 통일되기까지 수년이 걸렸음</p> <p>○ 법령 통합으로, 이러한 유형의 시도를 단축시킬 수 있음</p>	

<개인영상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p>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p>		

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통합법

○ 온라인 사업자나 금융기관 등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별도로 참조하여야 하는 노고가 있음

<위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 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p> <p>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p> <p>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p> <p>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 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흥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p> <p>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p>	<p>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p> <p>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p> <p>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p>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 목적을 벗어나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수탁자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p> <p>⑤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p>	<p>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p> <p>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p> <p>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p> <p>⑥ 제4항제3호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⑦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p> <p>17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p>
통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은 위탁시 공개 원칙이나 정보통신망법은 동의 원칙, 신용정보법은 고지 원칙이어서 상이한 규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위탁시 문서작성 의무에 대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은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은 침묵하고 있음. 때문에 온라인사업자, 금융기관이 이러한 의무가 있는지 견해가 갈리고 있음 ○ 위탁자의 교육의무에 대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신용정보법은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위탁을 허용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비하여 위탁범위를 축소하고 있음(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2항 참조) ○ 일관성과 통일적인 규율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67조(방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 **제24조**, **제24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수 있으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40조**, **제43조** 및 **제45조**(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를 적용한다.

<영업양도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방법	신용정보법
<p>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p>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p>	<p>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p>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라 그 이전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영업양수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p> <p>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p>⑤ 제4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p> <p>⑥ 제4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⑦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p>
통합법		

- 비교적 같은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음
- 따라서 법령 통합이 용이함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통합법		
<p>○ 개인정보취급자의 개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념인바, 온라인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취급자를 두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음</p>		

<관리>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 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p>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p>	<p>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p> <p>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해당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종류, 기록보존 및 활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p>
통합법		
<p>○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내부관리계획과 신용정보법의 내부관리규정에 있어 차이점이 있음</p> <p>○ 각 법의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기준이 약간 상이하여 혼란을 가져오고 있음</p> <p>○ 통일성과 일관성을 갖춘 전제에서, 필요에 따라 부가적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p>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p>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p> <p>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p>	<p>제27조의2(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해당되는 경우에만 취급방침에 포함한다) 5.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6.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그 전화번호 등 연락처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변경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지하고, 이</p>	<p>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p>

<p>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통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신용정보활용체제로 공개 대상의 명칭부터 상이함 ○ 온라인·오프라인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모두 공개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음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개대상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대상도 차이점을 보임 ○ 통일적인 규율이 바람직함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p>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p> <p>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된다.</p> <p>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그 밖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신용정보주체의 고충을 처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신용정보관리인이 제4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본다.</p>

통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명칭부터 차이를 보고 있음 ○ 이들의 자격요건도 상이함 ○ 통일적인 규율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p>		

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통합법

o 공공기관에만 등록의무가 있음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p> <p>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p> <p>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p>③ 안전행정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안전행정부 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p>		

<p>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통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영향평가는 공공기관만이 의무사항임 ○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온라인사업자에 대한 PIMS 제도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PIPL 제도의 운용상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증 제도를 통일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의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유출통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의3(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신고)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이하 "누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누출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통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유출통지 내용이 상이함 o 금융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출통지를 해야 하는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출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음 o 금융기관은 유출시 안행부·NIA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통위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음 o 개인정보 유출시 통일적인 규율을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대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행정으로 이어질 것임 		

<정보주체권리보장>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 	<p>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p> <p>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p>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오류의 정정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그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p> <p>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p>	<p>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p> <p>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p> <p>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p>

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⑦ 영업양수자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영업양수자등"으로 본다.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해당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오류정정의 요구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 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 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는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통합법

- 정보주체는 오프라인 기업, 온라인 기업,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열람권 등을 행사할 때, 그 상이한 절차를 전부 이해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
- 동일한 절차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면 정보주체의 권리신장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음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9조(무료 열람권) 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통합법		
<p>○ 개인정보이용내역 통지 제도를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할 수 있음</p>		

<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경받을 수 있다.</p>	<p>제3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④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p> <p>⑤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통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2항이 다른 법에는 없는 조항임 ○ 금융기관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신용정보법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청구해야 전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기에, 권리구제가 쉽지 않음 ○ 통일적인 규율은 권리주체의 구제에 큰 도움을 줄 것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제40조 내지 제50조		
통합법		
○ 개인정보라면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제51조 내지 제57조		
통합법		
o 개인정보라면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적용 제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p>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통합법
○ 친목 도모 및 영리 목적 온라인 카페의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의 의문이 발생함

<금지행위·비밀유지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p>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p>제28조의2(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p>	<p>제42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가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업관련자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통합법		
○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시정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64조(시정조치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p>	<p>제64조(자료의 제출 등)</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5조(감독·검사 등)</p> <p>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요구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통합법		
<p>○ 시정조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한바, 통일적인 규제가 바람직함</p>		

<고발 및 징계권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p> <p>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그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통합법		
<p>○ 고발권 및 징계권고는 안행부가 가지고 있음</p> <p>○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이러한 것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p>		

<결과공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66조(결과공표)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4조(자료의 제출 등)</p> <p>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통합법		
<p>o 결과발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방통위는 그렇지 않음</p> <p>o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행정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p>		

<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4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4.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경우 6.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7.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p>	

<권한의 위임·위탁>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p>	<p>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6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직원에게는 제64조 제8항을 준용한다.</p>	<p>제49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p>
통합법		
<p>○ 각 주문기관의 필요에 따라 위임·위탁을 하면 될 것임</p>		

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합법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용정보법은 과징금 제도가 아예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최근에 주민번호에 관하여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
- 동일한 위반 사항에 관하여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복불복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통일적 제재가 절실함

<별칙>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70조(별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71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p>제72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 	<p>제71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23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24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자 제28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30조제5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자 제31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p>제50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제33조를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그 위탁을 받은 자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자 <p>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3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72조(별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제73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한 자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또는 제7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통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법이 제재수준이 제일 약함 ○ 역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복불복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통일하는 것이 필요함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p>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2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p>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의2. 제27조의3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 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30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44조의5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p>제52조(과태료) ① 제32조제7항을 위반하여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를 위반한 자 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위탁한 자 4.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4의2.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19조를 위반한 자 6.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자 7. 제23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삭제 9. 제31조를 위반한 자 10. 제32조제3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한 자 11. 제35조 후단을 위반한 자 12.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13.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14.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자 15.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및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47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2.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의2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전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때 증표를 내보이지 아니한 자
 3. 제39조를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문서를 공개한 자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를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를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를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제24조의2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7조제7항 및 제4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4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지·폐지·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21.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통합법

- 신용정보법이 과태료 항목이 제일 작고, 과태료 수준도 제일 낮음
-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복불복 제재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발생함

토론 1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 정비 방향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 정비 방향

문금주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상 문제점과 대안’ 관련하여

-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국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개선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서 성선제 교수님이 발표하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으로 생각함
 - 향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실효성과 수범 가능성 등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겠음
- 정부에서는 지난 2.7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범정부 TF’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률의 개정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주관 부처로서 정보주체 권리 강화, 기업 책임성 제고, 자율 규제 촉진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다만, 성선재 교수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대체 방안을 마련하지는 내용은
 - 기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한 국민 불안감은 해소할 수 있으나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는 현재 담당부서가 전담 연구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 법제 통합 및 정부조직 개선방향’ 관련하여

- 실현될 수 있다면, 모든 개인정보에 관하여 적용되는 단일법을 만들고 기본적 원칙과 함께 각종 특수 분야의 규정을 모두 포괄하여 규정하는 것은 법률간 부정합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임
- 다만,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에 대한 단일법 체계는 분야별 규제 일관성 문제는 해소할 수 있으나, 다른 측면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
- 개인정보는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되는 쟁점이기 때문에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경우 모든 부처 및 상임위가 공동 소관이 되는바, 이로 인하여 대외 환경변화에 따른 법령 적시 개정과 각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한 입법 자체가 곤란할 수 있음
- 또한, 예를 들어 신용정보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통합 단일법을, 기타 법인 및 단체 정보에 대한 사항은 신용정보법에 따라야 하므로 법 체계에 따른 혼란은 여전함
- 아울러, 규율 대상이 늘어나고 복잡해짐에 따라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도 분법화* 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해서 규율할 수 있을지 의문임
- * 예시 : (당초) 환경보전법 ⇒ (현재)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5개 법률로 분법
- 따라서, 단일법 체계로의 입법방향은 매우 이상적인 방향이지만 상기한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 각 분야별 개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정밀하게 비교 검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 사항을 제거하고, 제재수준 일원화 등을 통해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토론 2

ICT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발전 방향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ICT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발전 방향

반상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과장

1. 서설

최근에 발생한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일반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개인정보의 범위, 동의제, 취급 위탁 등에서의 문제점을 다시 점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고가 기업과 각종 협회 등 '사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고 사회경제적, 혹은 사회정치적 반향 또한 결코 작지 않으리란 점 등을 감안할 때, 오늘 '지식한국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시사하는 바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관소찰(大觀小察)'이란 말이 있습니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자'는 얘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정비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변화하는 ICT 환경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틀 내에서 개인정보의 범위, 동의제, 취급 위탁 등과 관련된 법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져 현실에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제 및 규제 체계의 합리성

현행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의 분류 및 체계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법으로서 기능하면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융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신용정보보호법」이 특별법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체계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분야 정보통신망(방송·통신·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은 방통위가 수행하고 있으며,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은 안행부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간 분야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업무를 방통위가 수행해야 효율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고 정보보안 등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 대한 규제 업무의 특성상 서비스 가입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 등 시장 상황 분석이 용이하며, 개인정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등을 소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통신 서비스의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으로 양자간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이용을 활성화할 경우 신산업 육성 촉진 등 창조경제의 바탕이 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가 오남용 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로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과거 정보통신 산업 촉진과 사업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육성과 보호에 대한 균형적인 접근과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방통위는 타 부처에 비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방통위와 안행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측면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방통위와 안행부가 합동 점검단을 구성·운영 하는 등 공조하여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3. ICT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비하여 정보통신망 및 모바일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수성에 대응하는 특별법이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상 ICT 환경에 특화된 대표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취급방침(제27조의2)에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접속로그, 쿠키 정보 등 자동으로 수집되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 공개 및 거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 사물인터넷(IoE), 셋톱박스, 스마트TV 등 등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사실을 인지한 때 즉시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7조의3).

이는 전파성이 강한 온라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누출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제29조제2항) 및 이용내역 통지제(제30조의2)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일회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이 많고 개인정보의 보유 주체 및 다양한 이용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넷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외부 인터넷 망분리,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전송 및 저장시 암호화 등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15조).

이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4. 「정보통신망법」 개정에서 추가로 고려되어야 할 이슈

첫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비의 방향성은 큰 틀에서 빅데이터·클라우드·SNS·맞춤형 광고 등 정보통신망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ICT 환경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최근의 빅데이터·클라우드·SNS·맞춤형 광고 등 정보통신망 및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의 등장으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로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를 균형있게 규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이용내역정보, 생성정보, 행태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사회적 합의의 바탕하에 아직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의 바탕하에 설정된 공개된 개인정보 등 개인에 관한 정보들에 대한 처리기준이 정보통신망 및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어 관련 서비스의 활성화 및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균형있게 규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파성이 강한 온라인의 특성상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파급력은 오프라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금번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하여 국회에서 지적된 개인정보보호 등급 공시제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제도 등이 「정보통신망법」에 도입되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토론 3

개인신용정보 보호 제도 개선 방향

최 용 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개인신용정보 보호 제도 개선 방향

최용호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과장

1. 금융분야 개인정보(신용정보) 보호현황

- 금융위는 금번 카드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정보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3.10), 대책 관련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계류중

2. 종합대책 주요내용

- ① 정보 활용·제공시 동의서 양식 개선* 등을 통해 “포괄적 동의” 관행을 근절하고, 수집·활용정보 “필요최소화”
 - * 필수/선택 구분 명확화, 필수사항 모두 동의(계약요건 충족)후 선택사항 설명 등
- ② 금융회사 최초 거래에서만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그 이후에는 주민번호 수집 없이 신원확인만 거치도록 함
- ③ 본인의 정보이용·제공 상황을 확인하고, 본인 정보를 삭제·보안조치를 요구하는 등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하는 장치 마련
 - * 본인정보 이용·제공현황 확인 금융회사가 CB사의 본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중지 영업목적의 연락 중지 본인정보 삭제·보안조치 요청 등

- ④ 불법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은 “모집인” 활용시 “정보활용 관리대장”을 유지하고, “모집경로 확인” 등 금융회사 관리를 강화
 - 모집인 정보유출·불법정보 활용시 금융회사 책임(과징금 등) 부과
- ⑤ 문자·전화·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상품” 권유·모집은 전면 제한하고, 기타 상품에 대해서도 엄격한 절차* 마련
 - * 고객에 연락목적 및 정보취득 경로 등 안내, 비대면영업 관리대장 작성 등
- ⑥ 금융회사 내부 전산망 암호화, 금융분야 전산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기구 설치 등 전산 보안 강화 추진
- ⑦ 징벌적 과징금 도입(예. 관련 매출액의 3%) 등 제재수준 대폭 강화
- ⑧ 만일의 정보유출에 대비한 금융회사별 “대응 메뉴얼” 마련 및 공개

3. 향후 신용정보법의 역할정립과 그 개선 방향

① 법체계에 대한 기본방향

- 개인정보법을 정보보호의 기본법으로, 신용정보법과 정통방법 등은 각 대상에 대한 특별법으로 규율
- 개인정보법의 보호 조항을 신용정보법에 동일하게 인용
 - 특히 단어·용어 정의 및 형벌·과태료 기준 통일

② 세부사항 검토방향

- 대상자 범위 구체화 및 중첩 문제 해소
 - 신용정보법은 금융회사·유관기관에 적용되도록 대상을 한정
 - 중첩이 불가피한 부분*은 합동점검(ex. 안행부, 금융위, 방통위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
 - * 유관자(ex:VAN사)의 경우 여러 법이 중복 적용될 수 있어, 합동점검을 통해 법간 불일

치를 해소하는 방안 검토

- 신용정보법의 특수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분야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예외를 적용
 - * 예)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정보법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같음
- 신용정보 집중체제 관련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의 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③ 향후 계획

- 금년중 신용정보법 전면개정안 마련 추진

토론 4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

김국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선

김국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발제문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상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토론 요지

- 발제자는 제도적 차원에서 4가지 문제점, 인적 차원에서 3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는 바임.
- 아울러 발제자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3가지를 제시함.
투명성 강화, 전문성 강화,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발제자는 대안으로 제시함.
- (투명성 강화) 발제자가 제시한 대로 선택정보의 수집에 있어 동의절차를 악용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개인정보 이용, 제공내역,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처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수집¹만을 허용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함.
 - 또한, 수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엄밀한 자격요건 심사 및 책임기준의 강화는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전 업종의 확대는 반드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예외사항을 두지 않아야 할 것임.

¹ 최소한의 수집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각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입증 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하여야 함.

- (전문성 강화) 발제자가 제시한 대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담인력은 개인정보의 특수성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전담인력을 꾸준히 배출하여 각 분야별로 파견하는 것이 필요한 한편,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응능력도 향상시켜야 할 것임.
 - 정기적인 교육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의 채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의 확대를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새로운 보호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여 점점 발전하는 해킹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더불어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한 프로세스도 구축하여야 할 것임.
- (주민등록번호 폐지) 발제자가 제안한 주민등록번호 폐지 및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통한 무작위 발급번호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이경우도 제2의 주민등록번호로서 도용될 위험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필요하며 이에 더불어 보안책으로 갱신이 용이하여야 할 것임.
 -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폐지--- 신규 무작위 주민번호 부여 등--- 함으로써 수반되는 행정적인 비용이 막대할 것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전망은 없으며 상존하고 시간지체로 증폭되는 이 부문의 위험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음.
- (검토) 발제자가 제기한 문제에 동의하고, 그 대안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 산재해 있는 개인정보관련 법률의 통합과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정보 수집에 대한 검토 및 주민등록번호 갱신 및 폐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봄.
- 현 상황에서 보면,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보아야 함. 유출된 정보를 조합(주민등록번호, 대출정보,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하였을 때, 그것이 개인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의 특성상 한번 유출된 경우 그 정보가 수거되어 처음과 같이 회복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최단기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되,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 * 예를 들면, 개인정보유출의 사회적 파급성(물질적, 정신적 피해 등)을 인정하여 유출시킨

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 개인정보유출자에 대한 엄격한 징역형 등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의 조치 필요

- 참고로, 독일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식별번호(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고, 정부 기관이 업무수행 필요에 따라 개별번호 시스템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포르투갈의 경우 모든 국민에게 단 하나의 고유번호를 할당하지 못하도록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발제문 “개인정보보호법제 통합 및 정부조직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 요지

- 발제자가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공급자 중심의 법체계, 중복규제, 규제·책임의 비형평성, 권리구제의 어려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통합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 통합에 따른 조직 개선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함.
- 현행 분리감독 체제의 혼선은 법령이 통합되면 일정정도 해소되겠지만, 국내 상황 상(규제기관의 규제 분야가 중첩되고 혼재한 상황이 있음) 규제의 중복 및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조직이 통합될 경우 통합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보호 소홀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는 크지 아니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통합기관이 존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 타워를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방어막이 필요하다고 봄.
- (검토) 발제자가 제시했듯이,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경제성장의 전제로서 그 밑거름으로 사용되었고, 향후 이용가능한 개인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제가 제대로 정비,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치밀한 정보이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과 징벌적 처벌, 법령체계 정비, 컨트롤타워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임.

- 현재 국민들은 법과 정부, 기업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으며 이에 타당한 대응 없이는 지식정보사회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토론의견 종합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 오늘날 지식정보사회를 살고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사회는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소위 지식정보사회 담론을 펴왔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이 이뤄지는 초연결사회가 전개되고 있다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이 사회에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하나의 인간이 인간으로 존엄성이 유지, 발전되기 보다는 하나의 숫자 덩어리, 정보덩어리로 철저히 물상화 되어 가고 있다. 지나치게 사업자중심으로 생산성에만 몰입하여 정보가 일반 국민, 소비자에게는 편리가 아니라 위협적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 재산권 침해 및 위협을 넘어, 정체성 파괴와 존립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지식정보사회는 천박한 상업주의에 입각하기 보다는 정보 복지적 차원에서 보호와 이용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제대로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적절한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 그런데 처방에는 병을 최대한 해결하는 최선안이 이뤄져야지 애매한 차선 안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의 단일화에 대해서

물론 산재된 법률의 수준을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조절하고 조율하는 대안은 그 나름대로 차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법과 특별법의 병존은 여전히 문제를 노출하게 된다. 기존의 제반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단일한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가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보호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하는 최선책이다.

○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확보에 대해서

단일법으로 정비가 이뤄져도 단일법에 주무부처가 난립하면 법 개정 어려움도 증가하고 상황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는 등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규제 책무의 이행 기관은 독립적으로 통합된 기능이 부여되어야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가 가능하다. 아울러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다.

○ 주민번호에 대하여

이미 해외 사이트에서 조차 거래되는 주민번호는 그 자체가 효용의 도구이기보다는 위협의 도구가 되고 있다. 원천적으로 문제를 제거하는 특단이 필요하다. 지식정보사회의 미덕은 다양성이다. 다양한 개인 식별체제가 개발, 활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사회의 획일화된 식별체계는 그 자체가 노출위험성에서 가장 취약하고 사회의 창의성을 저해한다. 모든 개인정보의 키 정보로 기능하는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고민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통일한 국이라는 가까운 미래도 포함한 고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5

개인정보 통합법제 입법론

개인정보 통합법제 입법론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1) 융합적 관점

- 오늘날 개인정보의 활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분할 것 없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제공 및 활용되고 있음.
 - 개인정보 활용의 보편화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의 소통(복제·전송)이 용이해졌다는 점으로부터 기인함.
 -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활용은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 유통까지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

-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 영역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위 융합현상으로서 설명이 가능함.
 - 기존에 융합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기술적 차원의 미디어 융합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는 사회 영역간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특성이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과거 영역별로 구분되어 있던 규범 체계를 하나로 통합시킬 필요성을 제기하는 측면이 있음.(ex. 방송 및 통신)

- 자유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각 영역별 사업자들의 이용 대상(객체)이라기 보다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한 융합적 관점에서 규범통지(規範通知) 체계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음.

2) 체계적 관점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일반법-특별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일반법으로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별법을 특별법으로 취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규제 인식 및 집행 상 혼선이 발생함.
- 이러한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당해 사안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특별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법이 적용됨.
-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그 형성과정과 내용상의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반법-특별법 체계와는 일정부분 차이가 있음.
대표적으로 민법과 상법의 관계가 일반법-특별법 관계를 가지는데, 이 두 법은 규율 영역 상 포괄적인 유사성을 가짐.
-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있어 각 특별법은 고유의 규율영역을 가지며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전체 규율의 일부분에 불과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차이점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이미 존재하는 개별법(특별법)이 전제된 상황에서 일반법을 구성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통합법 체계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공동 소관 법률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혼선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판단됨.
- 공동 소관 법률 체계라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여겨질 수는 있지만, 현재 이러한 체계를 취하는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융합상황의 증대로 인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음.
- 현행법률 중 일부 주요한 부처 간 공동 소관 법률들을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표 1] 공동 소관 법률 예시

법률명	공동 소관 부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안전행정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국방부, 법무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방부, 안전행정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범죄 처벌법	경찰청, 해양경찰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경찰청, 법무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조달청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국무조정실, 외교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수산물과학기술 육성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제처, 안전행정부
약사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토교통부, 법무부, 해양수산부
전기통신사업법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제조물 책임법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신비밀보호법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 개인정보 통합법제 구성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성을 가지는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 규제영역을 예로 들자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네트워크상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규율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특별법으로서 기능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LBS 산업적 관점(특히, 사업자 중심 규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모바일 통신의 보편화·일상화와 더불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동법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지 않는 (단순)위치정보와 개인 식별 가능성을 가지는 개인위치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의 이용 및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현방식으로서의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음.(동법 제15조)
또한 오늘날 위치정보서비스는 일반적인 정보통신서비스와 별도의 법률로 규율할 정도의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함.
- 따라서 차재에 이러한 법률 중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통합하도록 하고, 만일 관련 산업 진흥 등 다른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부분만 존치시키는 방안들

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규제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가-사회적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키는 구심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재조정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단순한 심의·의결기관으로 전략(동법 제8조)하여,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6.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7.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8. 제64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
9.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0.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두 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19대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태임.

[표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강화 관련 법률안(개인정보 보호법)

의안 번호	제안자	제안 일자	주요내용
1907084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3. 9.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집행,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권리구제 등으로 하고, 그 위상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1명의 위원장 및 9명의 상임위원을 두되 위원장 및 2의 상임위원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함(안 제7조, 제7조의2 신설 및 제8조제1항).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을 강화함(안 제18조제2항·제6항, 제32조제2항·제3항 및 제35조제4항제3호). -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 침해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침해사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권리침해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권리구제 절차를 명시하며, 개인정보 관련 권리 구제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시정명령권, 긴급시정명령권, 고발권, 징계권고권, 조정회부권 등을 부여함(안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9까지).
1909357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4. 2.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관청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안전행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일원화함(안 제7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8까지 및 제8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에 위배되는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3) 구조적 관점

- 이상과 같은 통합법 구상과 동시에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숫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이제까지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대책은 기술적·관리적 차원의 대응에 그 초점을 맞추어 왔음.
- 즉 정보처리자들로 하여금 정보보호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한다든가, 특정 정보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가장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사회적으로 유통 및 집적되는 개인정보의 숫자를 줄이는 것임.
- 따라서 입법 정책적 측면에서 볼 때, 가급적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디자인이 요구됨.

□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을 특징짓는 과도한 본인확인 요구임.

- 일반 표현의 영역에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도입된 바 있었으나, 2012년 헌법재판소가 민간영역 온라인 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음.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민간영역에서의 활용을 부추긴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도, 본인확인이 전제된 전자상거래를 사실상 강제해 왔음.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보안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강제되어 왔음.
- 은행권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금융실명제에 기반 하여 인터넷 금융 거래 시 본인확인을 정당화하고 있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금융실명제의 운용과 인터넷 금융 거래 시 실명확인 문제를 동일시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실현이라는 측면에 관해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은 본인확인 체계가 매우 안전하며 실효적이라는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인하여 인터넷 활용의 위험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본인확인 체계가 전제된 인터넷 활용은 그 만큼 위험성이 있는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 및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의미함.
-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의 본인확인은 실제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숫자 등 정보의 일치여부 확인(대조)에 불과함.

인터넷을 통한 본인확인은 직접 대면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할지라도 오프라인과는 달리, 언제든지 다른 이의 정보를 악용하는 것이 가능함.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사실상 획일화된 공인인증서를 중심축으로 하는 전자 및 금융거래 체계는 상당한 편의성(실시간 이체 및 결제 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높은 위험성

을 항상 내포하고 있음.

-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를 활용한 인증을 민간기업(신용평가사 및 통신사)에 위임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더욱 높음.(KCB/KT)

□ 결론적으로, 인터넷상 본인확인 체계가 가지는 근원적인 문제 해결 없이(특히, 민간영역), 대체인증 수단의 도입만으로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없으며, 더욱이 개인 식별번호의 활용이 가지는 위험성을 본질적으로 제거할 수 없을 것임.

토론 6

개인정보 법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

최성진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개인정보 법제의 합리적 개선 필요

최성진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1. 현황

변화가 빠른 인터넷 산업의 특성상 중복된 개인정보보호는 성장을 방해하는 큰 걸림돌임.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SNS, 포털 사이트의 경우 개인정보로 구성된 프로필의 공개와 관심사 공유에 의한 인적네트워크 확대라는 특징은 필수적임. 하지만 개인정보라는 단일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과 함께 각종 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며 주무부처만 해도 현재 안행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어서 이들 부처의 가이드를 모두 지켜야하는 실정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규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임.

성선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담당자와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실함, 내부관리체계와 보안대책이 부실함, 수집·이용·제공·위탁·파기 등 개인정보 처리 기준과 절차의 무시'라는 지적은 주요 인터넷기업의 현실과 다름.

현재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보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준수하는 제도만 해도 10여 가지임. (정보보호 사전점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등 정보보호 안전진단,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 침해사고 대응 의무화 및 요구 동의, 개인정보처리제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 개인정보 열람, 분쟁조정,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등)

개인정보유출은 기업이미지 추락, 고객 이탈, 정부의 규제 등 전방위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넷 기업들 역시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제도의 문제점

(1) 개인정보 범위 불명확

현재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없이도 식별가능성만 있어도 개인정보로 정의함.

실례로, 페이스북 · 트위터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개인정보 노출 선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 중이기 때문에 이름, 성별, 출신학교, 혈액형 등으로 개인 식별가능성이 높음.

일정 수준의 정보공개 - 아이디 · 생년월일 · 출신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서비스 역시 개인정보 정의의 모호성 때문에 현행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환경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보가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밖에 없음.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파기, 열람 등 동일 사항에 대해 개별법령이 상이함.

김경환 변호사님의 중복규제에 대한 지적은 업계의 공통된 고충사항임.

•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제의 중복사례

-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현재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012년 8월 개정)은 온라인 기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2014년 8월 17일까지 파기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2013년 6월 개정)은 모든 개인정보 보호처리자에 대해 주민등록 수집을 금지하며 2014년 하반기 중 시행되어 2016년 하반기까지 기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파기해야 함.

• 제재규정의 중복사례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보호에 초점을 두고 지나치게 높은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규

정은 업계의 큰 부담임. 더군다나 조항의 내용이 상충되어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과징금과 형벌을 부과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음.

- 최근 개인정보의 유출 사건은 인터넷기업이 아닌 금융사 · 통신사에서 발생함. 신용정보 법에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과징금 및 벌칙 조항이 없음. 한편 정보통신망법은 과징금 1억 원 혹은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2년 이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남.

이는 인터넷기업이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 보유 · 활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로 인터넷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개인정보는 지극히 한정적이고 제한적임. 따라서 인터넷 공간이 개인정보의 유출이 온상지처럼 보여 지는 것은 과도한 우려임.

3. 결론

기업의 생명이 이용자의 활발한 활동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라는 취지에 적극 공감함. 그러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발전과 산업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법령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용자가 정보 제공에 있어 자기정보결정권의 측면에서 판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형사벌인 벌칙규정은 이용자와 신뢰를 기반으로 영업을 하는 인터넷기업에게는 치명적인 조항임. 따라서 동의제도와 관련한 부분은 비범죄화 하고, 과실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적용 가능한 행정벌인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것이 인터넷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임.

개인정보라는 하나의 사안으로 여러 부처의 규제를 받는 삼중고를 겪고 있음. 컨트롤 타워의 일원화를 통해 일관된 정책기구와 법제도를 마련한다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함.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ntended for writing the content of a memo. It occupies the majority of the page below the 'MEMO' header.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identical to the one on the left, intended for writing the content of a memo. It occupies the majority of the page below the 'MEMO' header.

